

서울고등법원 2020. 8. 18 선고 2019나203720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식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 담당변호사 최종모

변론 종결 2020. 6. 16.

판결 선고 2020. 8. 18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가합57244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403,846,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8. 8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

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67,146,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8. 8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1,403,846,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8. 8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.

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,036,7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. 8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부분을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.

원고는 제1심이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 부분, 즉 피고에게 367,146,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8. 8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.

2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시작되는 "피고의 배당금 2,250,000,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금은 846,153,527원,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금은 1,403,846,473원이었다."를 "피고의 배당금 2,250,000,000원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846,153,527원, 나머지 토지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금은 1,403,846,473원이었다."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

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원고의 주장 취지

가. 주위적 주장

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었는데, C조합이 마쳐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조건 불성취 내지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,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지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로 되었다. 한편 피고는 C조합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2413호 소송절차에서 C조합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,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, 이 사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지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로 되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위 나머지 토지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금 1,403,846,47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그중 367,146,47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

나. 예비적 주장

피고가 실제로 C조합과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전체 대여금 1,040,307,979원 중 I의 대여금 120,000,000원을 제외한 920,307,979원이고, 이율은 연 5%이다.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일인 2008. 8. 20. 당시 대여원리금을 계산하면 1,041,381,282원(원금 920,307,979원 + 이자 121,073,303원)이다.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,250,000,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1,208,618,718원(배당금 2,250,000,000원 - 위 대여원리금 1,041,381,282원)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367,146,47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

4. 판단

가.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행부터 제11쪽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나.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7행부터 제13쪽 15행까지 기재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,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.

『3)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

피고는 원고에게 2005. 12. 26. 1,500,000,000원을 월 3%의 이율로 대여하였고(당시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때이다), 그 대여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,250,000,000원을 배당받았다.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부분 경매절차도 무효로 되어, 피고는 낙찰자 L에게 위 배당금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배당금 846,153,52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했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 나머지 토지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금 1,403,846,473원(2,250,000,000원 - 846,153,527원)으로 볼 수 있다. 그런데 위 1,403,846,473원은 앞서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 1,500,000,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,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.』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오, 판사 박성윤, 판사 이의영